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제62조의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금융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 완결).
- 원천징수됨으로써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소득(소득금액 계산에서 불포함) : 세법상 금융이자소득 ⊕ 투자신탁의 이익
- 무조건 종합신고하여야 하는 소득 : 비영업대금이자 소득(대여금 등)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신고 제외

(법 제62조제1항)

1. 본 조의 개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수입·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등은 본 법 제15조의 익금항목도 아니며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일반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장부비치 및 기장 그리고 기타 사항은 일반법인에 준한다.

2. 과세표준의 신고여부

① 일반 과세표준신고에서의 제외 이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분야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영리법인과 똑같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입이자·할인액이나 금융이익 등의 이자소득은 금융기관들이 이자지급시 14%(2004년에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므로 일단 과세가 된 소득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자신의 임의선택으로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된 이자소득은 소득계산에 불포함한다.

② 과세표준의 신고가 배제되는 이자소득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익금산입에서 제외할 소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득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을 말한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면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데, 비영업대금이익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고 대부분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다.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의 규정
에 의하는데, 이 중 제3호의 이자는 전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제11호는
전액 자진신고 익금산입할 과세금액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 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조로 본다. (2010. 2. 18 개정)

3.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방법의 선택

1) 자진신고방법 및 관련 필수서류 (법 제62조제2항)

본 법 제73조의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본 법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배제하는데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이자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소득금액에 가산하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행규칙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조정계산, 세액신고서와 수입이자 등의 내역이 포함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서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005. 2. 28 개정)

2) 과세표준신고방법간의 선택

① 이자소득의 신고납부와 분리과세방법의 선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는 영리법인의 과세사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평과세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수익사업범위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이자소득 등이 수동적 자금운영소득이라 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한 형평과세라는 차원에서 수익사업분야로 보아 과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비영리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일반 경우와 같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이자수입의 14%를 원천징수당한 것도 이미 상당한 세금(일반세율은 22%이므로)을 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을 익금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14%의 세금부담으로 종결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자수입을 이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이나 지급준비금 등을 차감하면 순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감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선택관계가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은 총액에 대한 원천세율 원천징수와 순액에 대한 일반세율 자진납부라는 두개 방법간에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법인의 임의적 선택과 수시변경가능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에 대해 14% 원천징수된 채로 내버려둘지 혹은 이자수입을 익금산입하고 제반비용을 차감하여 종합신고납부할지는 순전히 비영리법인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매 1사업연도 단위로 하면 되므로 금년엔 포함 종합과세, 내년엔 불포함 분리과세 등으로 언제나 선택방법을 바꿀 수 있다. 결국 관련업무비용이 많이 발생된(50% 이상) 연도는 포함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업무비용이 50% 미만인 경우는 불포함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 업무비용 : 50% : $(100\% - 50\%) \times 22\% = 11 \leq 14\%$: 포함, 종합과세 순액유리

◎ 업무비용 : 20% : $(100\% - 20\%) \times 22\% = 17.6 > 14\%$: 불포함, 분리과세 유리

③ 일부만 적용할 수도 있음

이밖에 비영리법인이 당연도에 받는 이자소득금액 중 일부금액은 비용차감하여 순액에 대한 일반세율 신고·납부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으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4% 분리과세로 종결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기한후 신고·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10. 2. 18 개정)

3) 원천징수로 신고종결하는 방법 (법 제62조제2항)

본 조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이자소득은 본 법 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절차를 종결한다. 본 법 제73조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총 지급이자 소득금액의 14%(일반금융수익) 또는 25%(비영업대금이익)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애초부터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이러한 소득이 비영리법인의 소득인 경우라도 과세하지 않고 따라서 원천징수 배제대상이므로 원천징수절차는 종결된 것으로서 추가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 제 (2009. 2. 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용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위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

- 록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2009. 12. 31 개정)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약한 자금을 대한 이자수입 (2009. 2. 4 개정)
-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2009. 2. 4 개정)
-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약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약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9. 9. 21 개정)

▲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28 개정)

4) 지급준비금 설정방법에 의한 손금산입

본 법 제29조는 공익성·공공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중 그 공익성 비영리법인 자체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이나 비용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설정가능법인이라면 반드시 종합적 합산 포함 신고·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지급준비금 설정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만으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따라서 아무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재무제표라 하여도 자발신고 안하면 지급준비금설정방법에 의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으

로 세액이 환급되는 계산이 나올 때도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지도 않는다.

II. 장부의 비치·기장 및 세무상 제반의무

본 조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불포함시킨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로서 법인세납부를 대신하도록 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절차를 편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문에 대해 장부의 비치나 기장의무 및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는 있는 것이다. 이자소득만 과세표준에 불포함할 뿐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세무상 의무규정 및 가산세는 적용된다고 본다.